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
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형사소송법」(법률 제16924호, 2021. 1. 1. 시행)이 개정되면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을 위한 근거 조문이 변경됨에 따라, 「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」에서 인용하고 있던 「형사소송법」 조문을 현행 조문에 맞도록 정비하려는 것임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3. 4. ~ 4. 1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”를 “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제196조 및 제197조”를 “제245조의10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검찰 및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영은 검찰 및 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,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	-----	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0-----
제3조(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)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3조(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)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「형사소송법」 제196조 및 제197조에 따라 범죄수사 및 이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,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,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3조(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)	-----	제245조의10--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법무부 검찰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210